

의안번호	2216493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5.4.13.
추계번호	26D058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6조의4 (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)	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성평등 입법,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둠(제1항)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는 여성인 의원 전원으로 구성(제2항)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, 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별(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의 위원장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제외한다)로 1명을 둠(제3항)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함(제5항)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(제7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6조의4 (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성평등 입법,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여성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두고,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의 구성·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에 따라 여성국회의원협의회가 구성·운영될 경우, 성평등 입법,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회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 시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
- 다만, 현재까지 개정안에 따른 여성국회의원협의회와 유사한 협의회에 대한 참고 사례가 없고, 회의나 토론회의 규모, 개최횟수, 방법 등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활동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- 참고로, 국회의원연구단체의 경우,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발간비, 세미나·간담회 또는 회의경비, 전문가활용경비, 소규모 연구용역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국회의원연구단체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서로 다른 교섭단체(비교섭단체 포함) 소속 의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국회의원 1인은 3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음
 - 상반기 연구활동비는 1개 단체당 평균 476만원(2025년 기준)이 배정되었으며, 하반기는 전년도 연구활동을 평가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음

[표 1] 제22대국회 의원연구단체 현황(2025.5 기준)

(단위: 개)				
연구분야	정치·행정	경제·산업	사회·문화	계
단체 수	27	27	16	70

자료: 국회사무처

Ⅲ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